

종교인소득의 소득유형에 관한 고찰

정연식*

I. 서론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전면적으로 과세되고 있다. 종전까지도 일부 종교인의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였지만,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인 국세청 역시 이를 용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종전 소득세법에서 종교인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하는 바가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2015년말에 개정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소득을 종합소득 중에서 기타소득의 한 항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다만,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종교인이 스스로 자신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유형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종교인소득의 소득유형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종교인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특히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종교인소득 역시 근로소득이 될 수 없다고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한다는 이러한 주장들이 계속될 경우 어렵게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²⁾가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위험도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렵게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Ⅱ장에서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있다.

Ⅱ.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2.1 종교인소득의 소득유형

현행 소득세법은 “종교관련종사자³⁾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

* 계명대학교 회계세무학부 세무학전공

2) 어렵게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도입과정에 대해서는 권혁률(2017) 참조.

3)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서는 ‘종교인’이라는 용어 대신 ‘종교관련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

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함)"을 종교인소득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⁵⁾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⁶⁾ 결과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은 종교인소득의 소득유형을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2.2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다양한 비과세소득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비하여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서 별도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소득의 경우보다 비과세항목이 다소 적게 규정되어 있다.

<표 1>에서는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소득 항목들을 비교하여 표시하였다.⁷⁾

하면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로 정의하고 있다.(한국표준직업분류의 종교관련종사자(#248) 참조)

4) '종교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5) 현행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6호.

6) 현행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3항.

7) 현행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호, 5호 아목,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8조 제1항 참조.

<표 1> 종교인소득의 소득유형별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항목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근로 소득
본인 학자금	○	○
식사 또는 식사대(월 10만원 이내)	○	○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일직료·숙직료 등 - 여비(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포함) - 종교활동비(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사택제공이익(종교단체가 소유한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종교가 직접 임차한 사택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 ○ ○	○ ○ ○ ○ ○ ○(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종교단체가 부담하는 보험료	×	○
국민연금법에 의한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한 것) 및 사망일시금	×	○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	○
국외(북한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월 100만원 이내)	×	○

(주) '사택제공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임. 그러나 비과세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동일함.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일상적인 비과세소득항목들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종교인소득) 모두에 적용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등의 사용자부담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사망일시금 등,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월 100만원 이내의 국외근로보수 등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에만 비과세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 중에서 특히 '건강보험료 등의 사용자부담금'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든 종교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비과세적용을 받도록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3 필요경비 및 근로소득공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종교인소득에서 일정율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고,⁸⁾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종교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그 율은 다음과 같다.

8) 이 경우 일정율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보다 실제 필요경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를 적용한다.

<표 2> 종교인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과 '근로소득공제율'의 비교

종교인소득(기타소득)		근로소득	
과세소득	필요경비율	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율
2,000만원 이하	80%	500만원	70%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액의 5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3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6,000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20%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표 2>를 보면 종교인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근로소득공제율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종교인소득의 총수입금액을 대입하여 양자의 금액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근로소득공제'와 '종교인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의 금액 비교

과세소득	종교인소득(기타소득) 필요경비(A)	근로소득공제(B)	차이 (C=A-B)
1,000만원	800만원	550만원	250만원
2,000만원	1,600만원	825만원	775만원
3,000만원	2,100만원	975만원	1,125만원
4,000만원	2,600만원	1,125만원	1,475만원
5,000만원	2,900만원	1,225만원	1,675만원
6,000만원	3,200만원	1,275만원	1,925만원
7,000만원	3,400만원	1,325만원	2,075만원
8,000만원	3,600만원	1,375만원	2,225만원
9,000만원	3,800만원	1,425만원	2,375만원
1억원	4,000만원	1,475만원	2,525만원
1억1,000만원	4,200만원	1,495만원	2,705만원
1억2,000만원	4,400만원	1,515만원	2,885만원

<표 3>에 의하면 동일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의 근로소득공제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세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차이가 250만원이었고, 2,000만원인 경우 775만원, 5,000만원인 경우 1,675만원, 1억원인 경우 2,525만원이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만 보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보다 소득금액 계산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 계산과정은 소득금액 계산 이후에도 각종 소득공제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다시 다양한 공제감면세액

을 차감하여 최종적인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후속과정에서는 기타소득 보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더욱 다양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공제보다 많다고 하여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언제나 세금이 적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표 4>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간에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의하면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비하여 건강·고용보험료소득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장기펀드저축소득공제(2015년 이전 가입분)와 같은 소득공제들과,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와 같은 세액공제들을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제들 가운데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주택자금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한도가 매우 크다. 특히 주택자금소득공제의 경우 한도도 클 뿐 아니라(최대 1,800만원),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므로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세액에 미치는 효과 또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표 4> 소득세 과세체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비교)

과세 체계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①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② 필요경비		필요경비 (20~80%)	근로소득공제 (2~70%)	
③ 소득금액(①-②)				
④ 소득 공제	인적	기본(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인당 150만원)	○	
		추가(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특별	건강·고용보험료(전액)	×	○
		주택자금(300만원~1,800만원 한도)	×	○
	조특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장기펀드 저축액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개인연금저축	○	○	
⑤ 과세표준(③-④)				
⑥ (×) 세율(6~42%)				
⑦ 산출세액(⑤×⑥)				
⑧ 세액 공제	근로소득(50만원~74만원 한도)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	○	
	자녀(7세 이상: 1명 15, 2명 30, 3명 60만원) (출산·입양: 첫째 30, 둘째 50, 셋째 70만원)	○	○	
	연금계좌(15%(총급여 5500만초과자 12%), 4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 한도)	○	○	
	특별	보장성보험료(일반:12%,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15%, 100만원 한도)	×	○
		의료비(일반: 15%, 700만원 한도) (본인등: 15%, 무제한) (난임시술: 20%, 무제한)	×	○
		교육비(15%, 300만원(대학 900) 한도)	×	○
		기부금(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 정치자금: 25%)	○	○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은 특별 소득·세액공제 미신청자)	○ (7만원)	○ (13만원)	
	조특법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분)	○	○
월세(12%(총급여 5500만원초과자 10%), 750만원 한도)		×	○	
⑨ 결정세액(⑦-⑧)				
⑩ 기납부세액				
⑪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⑨-⑩)				
⑩ 기납부세액				

(자료) 국세청(2019), 「원천세신고안내(2019)」에서 수정인용함.



2.5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간 세액 비교

여기서는 가상 사례를 이용하여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의 소득세액을 비교해 보았다.

가상 사례는 기본공제대상자가 (A)1명(본인)인 경우와 (B)4명(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인 경우의 두 가지로 설정하고, 과세대상 종교인소득은 1천만원부터 1억2천만원까지 1천만원 단위로 세분하였으며, 소득공제의 경우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건강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였다.

<표 5> 종교인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액과 근로소득세액의 비교 - 사례 A

(단위: 만원, %는 과세소득에 대한 비율임)

구분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례A1	사례A2	사례A3	사례A4	사례A5	사례A6	사례A7	사례A1~A7
배우자	N/A							
기본공제대상자녀	N/A							
기부금-종교단체	10%							
직불카드사용액	0	30%	30%	30%	30%	30%	30%	N/A
월세	0	0	700	700	700	700	0	
교육비지출액	0	0	0	600	600	600	600	
의료비지출액	0	0	0	0	7%	10%	10%	
주택자금공제	0	0	0	0	0	0	1,000	
과세소득	근로소득세액							기타소득세액
1,000만원								0
2,000만원	5	5						0
3,000만원	33	28	0	0	0	0	0	16
4,000만원	141	132	48	0	0	0	0	36
5,000만원	253	241	157	67	37	15	0	112
6,000만원	370	357	287	197	161	134	54	201
7,000만원	531	505	435	345	303	272	164	309
8,000만원	752	723	723	633	585	549	309	417
9,000만원	957	925	925	835	781	740	500	542
1억원	1,163	1,127	1,127	1,037	977	932	692	722
1억1,000만원	1,375	1,335	1,335	1,245	1,179	1,130	890	902
1억2,000만원	1,674	1,611	1,611	1,521	1,449	1,395	1,080	1,082

(주) 세액계산은 국세청홈택스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모의계산 세액비교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

<표 6> 종교인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액과 근로소득세액의 비교 - 사례 B

(단위: 만원, %는 과세소득에 대한 비율임)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례B1	사례B2	사례B3	사례B4	사례B5	사례B6	사례B7	사례B1~B7		
배우자	1명									
기본공제대상자녀	2명									
기부금-종교단체	10%									
직불카드사용액	0	30%	30%	30%	30%	30%	30%	N/A		
교육비지출액	0	0	600	1000	1,400	1,800	1,800			
월세	0	0	0	700	700	700	0			
의료비지출액	0	0	0	0	7%	10%	10%			
주택자금공제	0	0	0	0	0	0	1,000			
과세소득	근로소득세액							기타소득세액		
1,000만원								0		
2,000만원								0		
3,000만원								0		
4,000만원								43	34	0
5,000만원								155	144	54
6,000만원	273	259	169	39	0	0	0	103		
7,000만원	396	380	290	160	58	0	0	211		
8,000만원	614	585	495	435	327	231	13	319		
9,000만원	819	787	697	637	523	422	182	427		
1억원	1,025	989	899	839	719	614	374	584		
1억1,000만원	1,237	1,197	1,107	1,047	921	812	572	764		
1억2,000만원	1,486	1,423	1,333	1,273	1,141	1,027	888	944		

(주) 세액계산은 국세청홈택스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모의계산 세액비교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

<표 5>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만 있는 경우의 사례A이며, <표 6>은 기본공제대상자가 4명(본인, 배우자, 자녀2)인 경우의 사례B이다. 각 사례별로 7가지 소득 및 세액공제 상황을 설정하고 각 상황마다 적절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부여하여 과세소득 수준별로 세액을 산출하였다.

먼저 <표 5>를 보면, 과세소득이 1,000만원인 모든 사례와 과세소득이 2,000만원인 5가지 사례에서 근로소득세액과 기타소득세액이 모두 0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는 과세소득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모든 사례와 4,000만원인 5가지 사례에서 근로소득세액과 기타소득세액이 모두 0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모두 0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양 소득유형 간에 세부담차이가 없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한편, <표 5>와 <표 6>의 사례들 중에서 노란색바탕의 사례들은 기타소득세액이 근로소득세액보다 큰 경우들이며, 바탕색이 없는 사례들은 근로소득세액이 기타소득세액보다 큰 경우들이다. 두 표 모두 상당한 사례들에서 기타소득세액이 근로소득세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금액을 부여하기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그러나 두 표에서 사용한 각종 공제금액이 특별히 비현실적인 수치가 아니며, 각 개인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들이다. 따라서 <표 5>와 <표 6>을 통해서도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⁹⁾

2.6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확정신고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산정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¹⁰⁾

한편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종교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또는 해당 종교인과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¹¹⁾

한편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에 관계없이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반기별납부’라 한다.¹²⁾

나. 원천징수의 예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불이행하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불이행시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¹³⁾ 이 때 종교인소득이 소득유형은 종교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¹⁴⁾

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¹⁵⁾ 이 경우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가 있을 경우 그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9)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의 필요경비율이 근로소득공제율보다 높아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대한예수교장로회 홈페이지의 재정부 자료실 등), 이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향후 다양한 실제 종교인소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0) 현행 소득세법 제127조, 제128호, 제129조.

11) 현행 소득세법 제137조, 제145조의3.

12) 현행 소득세법 제128조.

13) 현행 소득세법 제155조의6.

14) 국세청 (2018), 종교인과세 주요 해석사례 등 통보.

15) 현행 소득세법 제164조.

종교단체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지급금액의 1%(3개월 이내 지연제출 시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부과된다.¹⁶⁾

2.7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및 4대보험

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종전까지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만 수급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종전 소득세법에 의하면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두 가지 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를 전면시행하면서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두 가지 장려금의 수급대상이 되도록 하였다.¹⁷⁾

나. 4대보험¹⁸⁾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전면시행과 함께 종교인들의 4대보험 가입 여부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월별, 반기별)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둘째,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사업장가입자,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지역가입자 적용을 받는다. 다만,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시에도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합의하여 사업장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 적용이 가능하다.

셋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각각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종교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대상 아니다. 다만, 근로자 여부는 사업주에의 전속성,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Ⅲ. 선행연구의 검토

종교인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도입하기로 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중영(2015)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첫째, 고소득-저소득 종교인간의 수직적 과세형평을 악화시키고, 둘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소득세법의 종합소득 분류체계와 상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종교인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종교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수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6) 현행 소득세법 제81조.

17)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28.

18) 국세청 (2019),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사회보험) 질의·응답 자료”.

또한 이를 위하여 종교단체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고, 종교단체가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원천징수가 용이하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종교인의 세금 신고·납부를 용이하게 하는 법 개정 또는 행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승식, 박상연(2016)은 종교인소득이 과세로 전환된 이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첫째, 종교인소득 과세체계를 근로소득 중의 새로운 구분소득 항목으로 신설하도록 하고, 둘째,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도 원천징수 이행 관련 유인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며, 셋째,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근로소득공제 수준으로 까지 하향조정하며, 넷째, 종교단체의 전체 수입 지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태현, 나영, 육지훈(2018)은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하여 첫째,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둘째, 고소득 종교인의 소득세 부담을 불합리하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저소득 종교인의 사회보장 제도 수혜기회를 배제하며, 셋째,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의무를 선택적으로 이행하도록 허용한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훈, 허원(2018)은 현행 종교인소득세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 소득세법상 법적 근거를 둔 상황에서 그 논란들이 상당부분 정리되었다고 하면서, 특히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 위배여부, 세법상 근거유무, 이중과세 여부, 비과세 관행의 존중 여부 등과 같은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세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은 이러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법이론적인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종교인소득의 소득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종교인에게 소득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유지가능한 소득세 체계는 아니라 할 것이며,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볼 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종교단체와 관련한 세무조사에 대해 적정한 통제수단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선복(2019)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고찰하고 현행 제도를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첫째, 과세에 임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더 이상 종교인과세를 반대하거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주장을 하기보다, 복음전파와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이 되어 법적 질서를 존중하고 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둘째, 국가 역시 성경의 가르침이나 개념, 목회자의 속성 등 해당 종교를 이해한 가운데 조세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또 이미 다양한 구제와 봉사사역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그 순기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며, 셋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때, 소득금액에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이 많으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항목은 근로소득이 많아 최종 세액이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 보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과세 실무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여 그 제도에 따라 본이 되는 자세로 납세를 하는 모습이라고 하고, 넷째, 종교인소득 과세의 시행으로 소득세 부담 뿐 아니라 4대보험,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추가납부로 교회의 재정적 부담 증가가 예측되므로, 교회는 실무

적 관점에서 내부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종교인의 소득체계와 복지후생이 개선됨은 물론 과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 중에는 어렵게 도입된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무 적용방안들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지만, 다수의 연구들은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만 과세하고, 필요경비율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자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며, 종교단체에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이는 종교인소득을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된다. 처음부터 이런 방식의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더라면 많은 반대로 인해 아직도 논란만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어렵게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새로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제 막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난관에 처하지 않고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IV.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기타소득 정의의 문제

가. 소득세법상 소득유형 및 열거주의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의 유형을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각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에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나. 기타소득의 두 가지 요건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5. (생략)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위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타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이어야 하고, 둘째, 제1호에서 제26호까지 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종교인소득은 제26호에 규정되어 있다.

다. 기타소득의 두 가지 요건의 해석 문제

위의 기타소득의 두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이 상충되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소득들 중에서 특별히 26가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즉,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26가지 소득들은 본질적으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을 종교인소득에 적용할 경우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현행 소득세법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셈이 된다.

둘째,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26가지 소득들 중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도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해당 소득이 된다는 해석이다. 만약 종교인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 해석을 적용하면, 모든 종교인소득은 더 이상 기타소득이 되지 못하고 모두 근로소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하에서도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는 종교인소득을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한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결과라 하겠다.

라. 소결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전면도입되기 전에도 당시 소득세법하에서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 도입 후에 발표되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근본적으로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종교인소득의 본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러한 주장이나 견해에 따라 위의 두 번째 해석을 적용하면 현행 소득세법하에서도 모든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한 현행 소득세법의 개정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정의에 관한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을 수정하거나 통칙 등을 통하여 이러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4.2 소득유형 선택의 문제

가. 종교인에게 소득유형의 선택권 부여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에서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 자신이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위의 조문에는 어떠한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러므로 종교단체나 종교인이 자유롭게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소득세법 체계상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불과하므로 최종적인 소득유형 선택권은 종교인에게 부여된다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할 때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더라도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인소득을 종합소득

세 확정신고를 할 때 이를 다시 기타소득(또는 근로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나. 실질과세원칙의 위배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의 소득유형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실질과세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를 보다 구체화한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²⁰⁾

현행 소득세법에서 종교인에게 자신의 종교인소득 소득유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실질과세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종교인의 소득유형을 선택할 때 종교활동의 실질 즉, 자신의 종교활동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다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부담세액이 적은 쪽으로 소득유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부담최소화를 위하여 한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유형을 매년 변경한다면, 이는 둘 중 하나는 분명 실질에 위배되는 소득이라 하겠다. 또한 같은 종교단체에 소속된 여러 명의 종교인들이 동일한 종교활동을 수행하면서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이 또한 둘 중 하나는 실질에 위배되는 소득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이러한 신고행위가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유형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매년 다르게 선택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도 세부담최소화를 목적으로 종교인소득 소득유형을 선택하고자 하는 종교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세청의 인터넷세금신고사이트인 홈택스에 “근로소득,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모의계산 세액비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종교인소득 계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입력하면 ‘기타소득으로 계산한 세액’과 ‘근로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을 나란히 비교하면서 친절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다. 종교단체의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및 원천징수의 포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교인소득의 소득유형에 대한 최종선택권은 각 종교인에게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에 여러 명의 종교인이 소속되어 있을 경우 각 종교인별로 소득유형을 다르게 원천징수할 수도 있고, 또한 각 종교인들이 서로 다른 소득유형으로 각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각 종교인은 자신의 소득유형을 매년 변경할 수도 있다.²¹⁾ 다만, 매월 원천징수할 때마다 소득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²²⁾

따라서 한 종교단체에 여러 명의 종교인이 소속되어 있고 각 종교인마다 서로 다른 소득유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고, 각 종교인이 매년 자신의 소득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면, 해당 종교단체의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앞에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간에는 각종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준이 크게 다르고, 적용하는 간이세액표도 상이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

19) 국세청 (2019), “종교인과세 기재부의 법령해석 사례 요약”.

20) 임상엽, 정정운 (2019), 「2019세법개론」, 상경사.

21) 국세청 (2019), “종교인과세 기재부의 법령해석 사례 요약”.

22) 국세청 (2019), “종교인과세 기재부의 법령해석 사례 요약”.

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비하여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등 세액계산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인소득의 소득유형을 각 종교인이 선택할 수 있고 또 매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종교단체들이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포기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라. 소결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득유형을 적용해야 한다. 종교인에 따라서는 자신의 종교인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자신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유형을 한 가지로 특정해서 계속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단지 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도에 따라 소득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분명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동일한 종교단체에서 동일한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종교인들이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다른 종교인들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이 또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할 뿐 아니라, 세무업무면에서도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종교인들의 임의적인 소득유형 변경행위는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이 될 수 없다”는 그 동안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행위라 하겠다. 결국 종교인소득이 근로소득도 된다는 것을 종교인 스스로가 자인하는 셈이며,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종교인소득의 소득유형을 기타소득으로 단일화한다. 이렇게 할 경우 소득유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실질과세원칙 위배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많은 종교인들의 생각에도 부합하게 된다. 또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 초래될 수도 있는 각종 근로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따라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²³⁾

둘째, 위의 첫째 방안이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서, 개별 종교인들이 자신의 소득유형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할 경우 최소한 개별 종교인에게서 발생하는 실질과세 위배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다. 또한 종교인들이 세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자신들의 소득유형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간에 빈번하게 변경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반감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3) 이렇게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가 발간한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에서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 다만, 그 이유가 실질과세 차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과 관련해서 발생할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이다. 즉, 목회자는 담임목사이든 부교역자이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다.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소득 신고의 전제로 종교단체와 목회자들간에 근로계약(고용계약)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 문제나 노동조합의 결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동TF는 세액의 유불리를 떠나서 담임목사는 물론이고 부교역자들도 모두 기타소득으로 납세신고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4.3 원천징수의 예외 문제

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소득자, 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천징수를 통해서 국가는 세수의 대부분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세의 핵심이다.²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부 사업소득 지급자에게도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나.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의 문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였지만 이를 강제화하지는 않고 있다. 즉,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종교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²⁵⁾

소득세법에서는 거의 모든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강제화하고 있다. 근로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득은 첫째,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둘째,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뿐이며, 기타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득은 첫째, 음식·숙박용역 등에서의 봉사료, 둘째, 일정한 위약금과 배상금, 셋째, 뇌물, 넷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뿐이다. 이러한 소득들은 그 특성상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교단체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종교단체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종교인들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개별 종교인들이 자신의 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은 종교인에게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 소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제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은 물론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 거의 모든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종교단체에 대한 지나친 혜택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속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스스로 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미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종교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물론 영세한 종교단체

24) 이창희 (2011), 「세법강의」, 박영사.

25) 소득세법 제155조의6.

의 경우 원천징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모든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종교인들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V. 결론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다. 본고에서는 어렵게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잘 정착하도록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현행 종교인소득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는 표현의 해석 문제이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전제를 가지고 해석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종교인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해석한다면 종교인소득은 더 이상 기타소득이 될 수 없게 되며, 이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되는 것이다.

둘째, 종교인소득의 소득유형을 종교인이 스스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이다. 단지 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교인마다 소득유형이 다르거나, 한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연도마다 소득유형을 변경한다면 이는 조세법원칙 중 실질과세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무행정 입장에서도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이러한 세 부담 최소화를 위한 종교인들의 절세행위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만 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많은 이들의 반감을 초래하고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만 과세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 더 큰 명분을 부여함으로써 어렵게 시작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자체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종교단체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강제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든 근로소득으로든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이러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는 종교인이 스스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는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의 세금을 소득 지급 시점에 미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은 물론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 거의 모든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써 징세의 편의와 세금 탈루의 방지를 위하여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그런데 종교인들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개별 종교인들이 자신의 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종교인에게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는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이 관점에서 따라서는 종교인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표현을 수정하거나 통칙 등을 통하여 이러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종교인소득의 소득유형을 기타소득으로 단일화한다. 이는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이 될 수 없다는 많은 종교인들의 관점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세째, 위의 첫째 방안이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서, 개별 종교인들이 자신의 소득유형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할 경우 최소한 개별 종교인에게서 발생하는 실질과세 위배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종교인들이 세부담최소화를 위하여 자신들의 소득유형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간에 빈번하게 변경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네째,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를 강제화한다. 현행과 같이 종교단체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강제화하지 않을 경우 많은 종교인들이 소득세 신고를 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종교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물론 영세한 종교단체의 경우 원천징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모든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종교인들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국세청 (2019), 사회보험 질의·응답 자료.
국세청 (2019), 「원천세신고안내(2019)」
국세청 (2018), 종교인소득 주요 해석사례 등 통보.
국세청 (2019), 종교인과세 기재부의 법령해석 사례 요약.
국세청 (2019),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4대 사회보험 적용.
국세청 (2019), 종교인과세 질의응답 사례.
권혁률 (2017), 종교인 과세, 또 다시 2년 연기할 것인가, 기독교사상, 705, 104-113.
박승식, 박상연 (2016),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경영교육연구, 31(2), 371-389.
박중영 (2015),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 기타소득 과세에 따른 조세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45(0), 147-171.
박훈, 허원 (2018), 세법상 종교인소득세의 도입배경과 향후과제, 외법논집, 42(2), 71-88.
이선복 (2019), 종교인소득 과세의 성경적 의미와 실무 적용방안, 로고스경영학회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0.
이창희 (2011), 「세법강의」, 박영사.
임상엽, 정정운 (2018), 「2018세법개론」, 상경사.
조태현, 나영, 육지훈 (2018), 종교인 소득 과세반대논리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소득세법 개선방향, 글로벌경영학회지, 15(2), 25-54.
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 (2018),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312&efYd=20190101#0000>)
국세청홈택스,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모의계산 세액비교 프로그램,
(

제36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논문 (19.10.26)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정부,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2_02_07&wr_id=115)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직업분류(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